

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18
----------	-----

2014년 12월 18일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11월 20일, 성백진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20일

다. 상정일자 :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(2014년 12월 18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성백진)

○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태호)

가. 개요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,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.

<조항별 신·구 대비표>

조항 구분	현행	개정안
제2조 중	동법	같은 법
제4조 제1항 제2호 중	동시설	그 시설
제10조 제2항 제5호 중	미혼모·부자의	미혼모자·미혼부자의
제13조 제2항 중	수탁자가	위탁받은 자가
	임면하며	임명 또는 해임하며
	임면한	임명 또는 해임한

나.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, 이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자치법규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, 그 긍정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동법”을 “같은 법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1항 제2호 중 “동시설”을 “그 시설”로 한다.

제10조 제2항 제5호 중 “미혼모·부자의”를 “미혼모자·미혼부자의”로 한다.

제13조 제2항 중 “수탁자가”를 “위탁받은 자가”로 하고 “임면하며”를 “임명 또는 해임하며”로 하고 “임면한”을 “임명 또는 해임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동법 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제4조(지원대상)</p> <p>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<u>동시설을 이용하는 자</u></p> <p>제10조(설치 및 기능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<u>미혼모·부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</u></p> <p>제13조(운영의 위탁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서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은 <u>수탁자가</u> 시장의 승인을 얻어 <u>임면하며</u>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장이 <u>임면한</u>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<u>같은 법</u> ----- -----</p> <p>제4조(지원대상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그 시</u> <u>설을</u> -----</p> <p>제10조(설치 및 기능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미혼모자·미혼부자의</u> ----- -----</p> <p>제13조(운영의 위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위탁받은 자가</u> ----- ----- <u>임명 또는 해임하며</u> ----- ----- <u>임명 또는 해임한</u> ----- -----</p>